

2020년 4분기 예비비 사용보고

□ 보고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
- 보고내용 : 2020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
 - 사용내역 : 총 2건, 11,902,836천원

(단위:천원)

부 서	세부 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사용액		승인일
				증	감	
				11,902,836	△11,902,836	
공상경제 담당관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98,800,019	-	△252,836	2020. 10.27.
	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	자치단체자본보조 (403-01)	1,062,275	252,836	-	
제분과 담당관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32,883,163	-	△11,650,000	2020. 12.29
	상품권 발행 운영사업	사무관리비 (201-01)	300,000	11,650,000	-	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①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(252,836천원)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상인의 매출 감소, 임대료 부담 가중에 따라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'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'을 진행하였음
- 이에 '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' 3차(6~9월) 추가 공모 실시한 결과 건물유지보수 신청이 많아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초과 소요가 발생

* 3차 공모 건물보수지원액(자치단체자본보조) 4.5억원 중 2.5억원으로 사용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사용액		승인일
			증	감	
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98,800,019	-	△252,836	2020. 10.27.
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	자치단체자본보조 (403-01)	1,062,275	252,836	-	

② 좋결제 캠페인 지원 사업(11,650,000천원)

- 정부와 지자체에서 `20.12.8.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.5단계로 격상하고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 하였고,
- 영업제한으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이들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'좋결제 상품권'을 발행

* 116.5억원은 할인보전금 100억원, 발행수수료 16.5억원으로 사용

(단위:천원)

세부 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사용액		승인일
			증	감	
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32,883,163	-	△11,650,000	2020. 12.29
상품권 발행 운영사업	사무관리비 (201-01)	300,000	11,650,000	-	

붙 임 : 1. '20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개요 1부

2.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좋결제 추진계획 1부. 끝.

붙임1 '20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개요

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매출감소 및 임대료 부담 가중에 따른 임대료 인하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도모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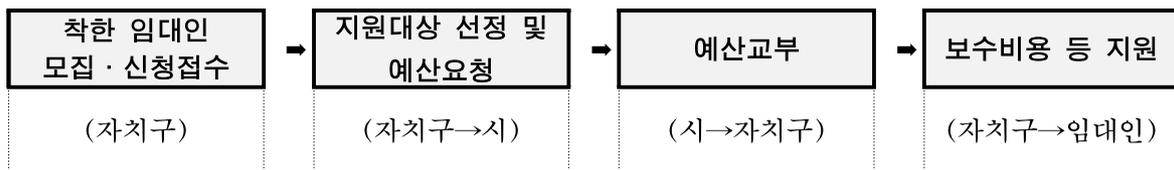
○ 지원대상

- 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하는 임대인

○ 지원내용

- 건물 보수비용 보조(총 임대료 인하액의 30% 내 최대 5백만원 지원)
- 전기안전점검 지원,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 등

○ 지원절차



□ 추진경과

○ 임대료 인하 임대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

- 「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('20.3.6.)
→ 제5조의 2(재난피해 지원) 조항 신설('20.3.26)

〈신설조항 내용〉

제5조의2(재난 피해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('20.3.20.)
-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시의회 가결('20.3.24.)
 - 예산액 : 2,356백만원
(사무관리비 135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659, 자치단체자본보조 562)
-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공고(제1차~3차) 및 신청접수
 - 접수기관 : 25개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 담당부서
 - 접수기간 : 1차'20.4.10(금)~4.24(금). 2차 5.1.(금)~5.29.(금) 3차 6.19.(금) ~ 9.29.(화)
-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전용('20.6.)
 - 건물유지보수 신청이 많아 신청 수요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500백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

□ **교부실적**

- 총 교부액 : 총 24억원(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억)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액 (A+B)	자치단체자본보조		자치단체경상보조금(B)			
		접수	건물보수 지원액(A)	전기안전점검 지원액	방역 지원액	방역물품 지원액	홍보 지원액
계	2,406	737	1,314	66	276	648	102
1차 공모	685	269	477	42	156		10
2차 공모	535	235	386	7	96		46
3차 공모	1,186	233	451	17	24	648	46

붙임2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결제 추진계획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상향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'선결제 캠페인'을 추진

□ 추진배경

-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청·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, 운동시설, 학원, 사우나,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속도 증가
-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2.5단계로 격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중
- 제한업종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손실이 막대하고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

⇒ 소상공인 피해를 단기·집중 지원 위해 시민참여 선결제 문화 확산 추진

□ 발행개요

- 발행목적 : 영업제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한 광역상품권 10% 할인판매 및 사용기한 단축으로 선결제를 유도하여 단기간내 매출증대 유도
- 발행일시 : 2020. 12. 28.(월)
- 발행규모 : 1,000억원(유효기간 '21.3 / 구매 한도 : 30만원)
- 판매액 : 450억원(2.10 현재)
- 소요예산 : 116.5억원('20년 예비비)

□ 추진경과

- '20.12.23.(수) ~ 업종단체 통한 일괄 참여 추진
- '20.12.28.(월) 선결제상품권 10% 할인 판매 개시
- '20.12.28.(월) 지맵, 홈페이지 검색 및 결제 서비스 오픈
- '21.01.20.(수)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 및 혜택 확대